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14호 2022. 2. 25.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27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4
- 삼척시 고시 제28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 7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19호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 삼척시 공고 제222호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 삼척시 공고 제231호 삼척갈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33
- 삼척시 공고 제253호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6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 2022- 2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삼척시장

1. 사업주체 상호 및 소재지

- 상 호 : 신성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 김연기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424 ,405호(용두동)

2.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 54번지 외 8필지
- 대지면적 : 9,679㎡
- 건축면적 : 1,991.4175㎡
- 연 면 적 : 31,271.7791㎡
- 사업규모 : 아파트 3동 및 부대시설 5동 / 205세대
- 평형별세대수 : 59㎡형 - 36세대, 82㎡형 - 2세대, 84㎡형 - 167세대
- 층 수 : 지하2층 / 지상 20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 업 비 : 36,227백만원

3. 사업시행기간 : 2020. 10. 01. ~ 2023. 06. 30.

4.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5. 의제사항 고시 목록

- 해당없음

삼척시 고시 제2022 -2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22.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4306-51 (갈천동)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3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95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4306-51 (갈천동)	20220222	가설건축물	20090710	동해를 연결하는 주요도로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가노리 158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미로강변로 34	20220222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지형지물명칭활용(미로면,오십천)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산32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2637	20220222	가설건축물	20220218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삼척시 고시 제2022 - 28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25.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기길 362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033-70-394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ag.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기길 362	폐 지	20220225	건물멸실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402-8	폐 지	20220225	건물멸실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206-19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 28 (교동)	20220225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 (교동하실골)활용 (기존도로명)
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무건리 산50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기길 364-4	2022022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이	하	여	백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폐지	부여 2건, 폐지 2건	폐지					
폐지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기길 362	폐지	부여 2건, 폐지 2건	폐지	20220225	건물멸실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폐지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402-8	폐지		폐지	20220225	건물멸실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 기존도로명 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206-19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 28 (교동)			20220225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교동하실길)활용(기준도로명)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무건리 산50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기길 364-4			2022022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공고 제2022-219호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삼척시장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21. 6. 10.시행)됨에 따라, 삼척시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의 변경
(현행)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개정) 삼척시 지능정보화 조례
- 나. 지능정보화 책임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지능정보화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 지능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1조)
- 바. 정보접근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3조)
- 사. 지역정보화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3조)

아. 주요 개정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 용어변경 등 - 정보, 지역정보화, 정보책임관	○ 용어변경 등 - 자능정보, 자능정보화, 자능정보책임관 -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삭제	
○ 지역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총무과(전산부서)
- 전화 : 033-570-3460
- FAX : 033-570-3164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부서”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

-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 교류 확대
-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6. 최신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확산 추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1호, 제2호의 사업은 상위기관 보조사업에 근거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하고 그 외 사업은 시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제경비 지원
- 2. 정보화마을 육성 및 활성화 사업지원
- 3.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지원
- 4. 주민 지능정보화 교육
- 5. 그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및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민관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

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장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실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의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삼척시 지역정보화위원회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삼척시 지역정보화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 및 해촉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2-222호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삼척시장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금사업자의 신청 없이 예산 계상 가능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안 제5조)
- 다. 중요재산의 보고 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라. 신고포상금 지급 및 지급제한, 지급신청의 종결절차 신설(안 제8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3월 10일까지 삼척시장(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기획조정실
- 2) 전화 : 033-570-3212
- 3) 팩스 : 033-570-3131
- 4) 전자우편 : khn197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규칙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시장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 보도 등으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삼척시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					
세무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m ²)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¹⁾	명칭	면적(m ²)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¹⁾	명칭	면적(m ²)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① 신청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2 - 231호

삼척갈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삼척갈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5일

삼척시장

1. 계획의 개요

- 지 구 명 : 삼척갈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일원
- 면 적 : 75,740㎡
- 제 안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열람기간 및 장소

- 열 람 기 간 : 2022. 2. 25. ~ 2022. 3. 18. (21일간)
- 열 람 장 소 : 강원도 삼척시 도시과 (☎ 033-570-3445)
- 열 람 도 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 출 기 간 : 2022. 2. 25. ~ 2022. 3. 18. (21일간)
- 제 출 방 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 타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 033-258-4246), 삼척시 도시과(☎ 033-570-3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2-253호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삼척시장

1. 제안이유

수소시범·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한 주민수용성 제고 및 조성 후 원만한 사업 지속을 위해 사업단지가 소재한 당해 마을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수소시범·특화단지 주변지역의 범위 및 지원가능 사업의 종류·재원 조항 신설(제16조 제1항, 제2항)
- 16조 신설에 따른 현행 제16조, 제17조는 각각 제17조, 제18조로 변경

3. 입법예고기간 : 2022. 2. 24. ~ 3. 16.(20일간)

4. 의견제출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에너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에너지정책과
- 전 화 : 033-570-3743
- 팩 스 : 033-570-3181
- 전자우편 : bittersweet@korea.kr

5. 그 밖의 사항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수소시범·특화단지 주변지역 지원) ① 시장은 수소시범·특화단지가 소재한 해당 마을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소득증대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에너지 절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사업
 4.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및 집기류 구입
 5.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저장·운송·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서	
	수정안	검토사유